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485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박○○
 부산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경
피고, 항소인 구○○
 부산 연제구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20. 선고 2010가소402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3.부터 2012.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출제위원을 알지 못하며 2010년 수능시험에 대한 예상문제집을 만들어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 10. 부산 북구 ○○동 000-0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나는 ○○대학교를 나왔고 친구가 수능시험 출제위원이다. 나에게 당신 딸의 수학 과외교습을 맡기면 수능시험 1주일 전에 수능시험문제와 유사한 예상문제집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로부터 1주일에 2회 내지 3회씩 고등학교 3학년인 원고의 딸 이○○의 수학 과외교습을 받고 피고에게 1회 교습에 300,000원씩을 지급하

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15.부터 2009. 11. 9.까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이○○에게 수학 과외교습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1. 10. 600,000원, ② 2009. 1. 17. 500,000원, ③ 2009. 2. 13. 600,000원, ④ 2009. 3. 17. 600,000원, ⑤ 2009. 4. 20. 600,000원, ⑥ 2009. 5. 20. 600,000원, ⑦ 2009. 6. 22. 900,000원, ⑧ 2009. 7. 22. 900,000원, ⑨ 2009. 8. 25. 900,000원, ⑩ 2009. 10. 13. 9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약정한 과외교습 중 일부를 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교습비 9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에게 2010년 수능시험에 대한 예상문제집을 교부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로부터 7,1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7,10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0원 합계 1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로부터 7,100,000원을 편취하여 그 중 9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증거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학원, 부산 수영구 ○○동에 있는 ○○○○○○학원,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학원,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학원,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학원 등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점, 피고가 2009. 1. 15.부터 2009. 11. 9.까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1회에 90분씩 이○○에게 수학 과외 교습을 한 점, 이○○이 2010년 수능시험 수리영역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함께 7,200,000원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6,200,000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상혁

 판사 전성준

 판사 김남수